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모성보호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임금체불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50명(6급 293명, 7급 292명, 8급 65명) 및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50명(6급 157명, 7급 158명, 8급 35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10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4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28. ~ 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의 제목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한시조직”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652”를 “654”로 하고, 일반직 계 “645”를 “6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6”을 “61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8,482”를 “9,482”로 하고, 일반직 계 “8,481”을 “9,48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447”을 “9,447”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8,481”을 “9,481”로 하고, 일반직 계 “8,480”을 “9,48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446”을 “9,446”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에 9) 및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650명
10)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350명

별표 6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장의 제목, 제4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장 <u>한시조직 및 한시정원</u> 제43조(한시정원)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4월 12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제10장 <u>한시조직</u> <삭 제>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52</u>	<u>654</u>	+2
·	·	·	
·	·	·	
일반직 계	<u>645</u>	<u>647</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16</u>	<u>618</u>	+2
·	·	·	
·	·	·	

[별표 3]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482</u>	<u>9,482</u>	+1,000
·	·	·	
·	·	·	
일반직 계	<u>8,481</u>	<u>9,481</u>	+1,000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447</u>	<u>9,447</u>	+1,000
·	·	·	

[별표 3의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3595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481</u>	<u>9,481</u>	+1,000
•	•	•	
•	•	•	
일반직 계	<u>8,480</u>	<u>9,480</u>	+1,000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446</u>	<u>9,446</u>	+1,000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8